

주법 및 연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

가정폭력을 경험한 임차인은
캘리포니아 주법 및 공정주택법
(Fair Housing Act, 7 CFR §
1901.203)과 같은 특정 연방법에
의해 보호를 받습니다.

그 외 다른 연방법은
연방보조주택에 대한 임대차
신청에 있어서 가정폭력 경험자를
거부하는 것을 각별히 금지하고
있습니다. (24 CFR § 5.2005 -
VAWA Protections)

HERA

HERA 주택 및
경제적 권리 옹호단체

연락처:

(510) 271-8443 내선번호. 300

inquiries@heraca.org

www.heraca.org

P.O. Box 29435

Oakland, CA 94604



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여성
및소녀 지위 위원회(California
Commission on the Status of
Women and Girls)의 협찬으로
실현되었습니다.

가정폭력으로 인해
임대주택을
거부당하지 않을 권리



공공/정부보조 주택에 대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:

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신용불량, 임대 이력, 임대료/공공요금 미납 또는 이전 임대 위반사항 등을 이유로 주택 신청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

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:

HUD에서 제공한 양식서에 다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:

- 신청자는 가정폭력 생존자입니다
- 주택신청이 거부되는 이유는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습니다
- 가해자의 성명(이름을 알고 있고 신변상의 위험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)

저렴한 주택 프로그램(제8조, 공공주택, LHTC 주택으로 알려진 저렴한 주택 등)의 임차인도 여성폭력법(34 U.S.C. § 12491(b)(1))하에 보호를 받습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의 임차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용 불량, 채무 또는 임대 위반을 이유로 퇴거나 주택 거부를 당할 수 없습니다.

실질적 조언: 많은 주택 제공자들은 이러한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용 및 임대 문제로 주택을 거부당한 경우, 사회복지사나 변호사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옹호 받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 HUD 서신 7쪽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<https://www.hud.gov/sites/documents/17-05hsgn.pdf>.

기타 자료:

- 떠날 준비에 대한 정보: 가정폭력대항 국가연합회, 귀하의 개인 재정을 위한 희망 및 파워:

https://ncadv.org/assets/2497/hope_and_power_english_version.pdf?1506375199990=

- 신용점수 문제 및 금융 남용 자료 관련 정보:

www.debt.org/advice/financial-help-domestic-violence-victims/

- 캘리포니아주 접근금지명령 조치에 관한 정보 :

WomensLaw.org, 캘리포니아주 접근금지명령
<https://www.womenslaw.org/legs/ca/restraining-orders>